《 2018년 11월 경상남도 반상회 홍보목록 》

연번	홍 보 자 료	도 담당부서
1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도시계획과
2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친환경농업과
3	2018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환경정책과
4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구매 및 사용	수질관리과
5	경피용 BCG 백신 회수 조치관련 접종우려에 대한 안내	보건행정과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장애인복지과
7	산불방지 예방 홍보	산림녹지과
8	농약허용기준 강화(PLS)-2019년 1월1일 시행	농산물유통과
9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 운영 안내	안전점검단
10	2018년 11월 국정홍보만화 (기술탈취 근절)	문화예술과
11	2018년 11월 국정홍보만화 (복지상담, 카카오톡)	문화예술과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055-211-4235)

❑ 도로교통법 개정 (‘18.3.27. 공포, ’18.9.28. 시행)

❍ 추진배경

–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됨 (’13. 3. 23. 시행)

– 지난 5년간(‘12년~‘16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머리 손상이 38.4%로 가장 높아 안전모 착용 확대가 요구됨

❍ 현행법령(’18.9.28. 개정시행)

– 자전거도로[1]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2]를 운전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함(법 제50조제4항)

※ 안전모 착용 의무만 규정, 처벌은 규정되지 않음

- 도로교통법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 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용차용 안전모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 협조사항

❍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국민 안전문화로 자리 잡도록 시민 및 동호회 등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 공영자전거 운영 시·군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의무 강화

---

1) 자전거법 제3조에 따른 도로 ① 자전거전용도로 ②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③자전거전용차로 ④ 자전거 우선도로

2) 도로법 제2조, 제10조에 따른 도로 ① 고속국도 ② 일반도로 ③ 특별시도·광역시도 ④ 지방도 ⑤ 시·군·구도

붙 임	안전모 의무화 홍보 리플릿-1

붙 임 안전모 의무화 홍보 리플릿-2

꼭 기억하세요! "자동차는 안전벨트, 자전거는 안전모"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자료제공: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055-211-6344)

○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활동 뒷받침을 위해 마련되었음.

○ 가입대상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보험가입금액(생산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
- 옥수수·콩의 보험가입금액(생산액) 100만원 이상인 농지, 벼·밀의 보험 가입금액(생산액) 50만원 이상 농지는 보험 가입가능
-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와 버섯작물은 경작면적 300m^2 이상, 차(茶)는 1,000m^2 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

○ 보험내용

- 자연재해·조수해(새와 짐승에 의한 피해)·화재 등 피해농가에 대한 보장

○ 가입기간 및 가입처

- 가입기간 : 품목별 연중 일정기간 지정(2월~12월 기간중)
- 가 입 처 :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

○ '18년도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 지난해에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24,783호, 가입면적24,919ha, 가입률 23%이며, 가뭄, 강풍, 우박 등 재해에 대하여 2,797농가에서 25,935백만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음.

- '18년도에는 벼는 깨씨무늬병·먹노린재 병충해, 감자·고추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병충해, 인삼은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우박·폭염·냉해에 대한 보장내용이 확대되었고

- 보험대상품목은 52품목으로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4%로 지원 되고 도내 농업인은 나머지 16%만 자부담하여 가입.

- 2019년도에는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30%, 자부담(농업인) 10%로 지원 할 계획 임.

2018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055-211-6645)

❑ 운영개요

- ❍ 기　　간 : '18. 11. 19.~ 12. 7.(3주간)
- ❍ 수거대상 :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
- ❍ 수 거 반 : 전 시·군
- ❍ 추진방향
  - – 유관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협조하여 수거 실시
  - – 지역일자리사업 활용, 공공근로 및 환경미화원 등 가용인력 활용
  - – 농림축산식품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연계 수거(군지역)

❑ 추진방법

- ❍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등 집중 수거
- ❍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 ❍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요령 교육 및 홍보
- ❍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안내

❑ 협조사항

- ❍ 집중수거 기간 중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 적극 수거 협조
-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수거보상금 제도 적극 홍보

붙임1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배출방법

❍ 폐 비 닐 : 이물질(수분, 흙 등)을 최대한 제거 후 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PVC 등)로 구분

- **제외대상 : 보온덮개(부직포), 차광망, 그물, 반사지 등**

❍ 농약용기류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플라스틱, 봉지류)로 구분

- **제외대상 : '농약' 표기가 없는 유사용기(착색제, 성장촉진·영양제, 친환경유기농자재)**

❍ 보 관 : 공동집하장, 마을별 수거 장소 등 수거가능 장소에 보관

공동집하장(폐비닐)	공단수거차량(5톤차량)	잘못된 사례(생활쓰레기 혼합보관)
공동집하장(농약용기)	투명 그물망 활용(농약병)	투명 그물망 활용(농약봉지)

❑ 수거안내

❍ 다량(5톤)일 경우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사업팀(051-366-3723) 또는 콜센터(1661-6620)로 신청 ⇨ 공단수거

❍ 소량일 경우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개인 직접 운송 가능

- 수거사업소 : 매주 수요일 개방(051-366-3724~5)

담당 부서	수거사업소	주 소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사업팀	부산수거사업소	경남 양산시 소주공단2길 63
	마산수거사업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수곡로 65
	사천수거사업소	경남 사천시 축동면 두량로 94
	의령수거사업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16
	합천수거사업소	경남 합천군 쌍백면 쌍백중앙로 624-6
	거창수거사업소	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농공길 46

※ 수거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배출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 6자리, 계좌번호, 주소 등을 수집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사항」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붙임2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 폐비닐 수거보상금 제도

❍ 지급대상자 : 시·군 조례 등에서 정한 수거자(마을이장, 작목반장 등)

❍ 지급주체 : 시·군

❍ 지급금액 : 폐비닐 수거량 및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kg당 평균 100원 정도)

시군명	등급별금액(A/B/C)	비 고
창원·진주·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시, 고성·하동·산청군	140/100/60	
통영시, 함안군	120/100/80	
남해군	100/80/60	
의령군	110/80/60	
함양군	101/66/53	'17년 기준
거창군	150/100	A/B등급
창녕군	140/110/60	
합천군	140/100/60	

❍ 지급절차

발 생	분리배출	수거(등급판정)	수거량 통보	수거보상금 지급
농가 · 마을	공동집하장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시 · 군	시 · 군

❑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제도

❍ 지급대상자 : 폐농약용기 배출자(마을이장, 작목반장, 개인 등)

❍ 지급주체 : 한국환경공단

❍ 지급금액 : 플라스틱병류 100원/개, 봉지류 80원/개

❍ 지급절차

발 생	분리배출	수거	수거보상금 지급
농가 · 마을	공동집하장, 마을별 수거함 등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구매 및 사용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 055-211-6754)

❑ 정상적인 오물분쇄기 : 인증제품

○ 소비자에게 인증제품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 www.gdis.or.kr

❑ 불법 판매유형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시중에는 인증제품과 달리 2차 처리기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2차 처리기 내부기능(수거망·하부거름망) 탈·부착 또는 2차 처리기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
- 2차 처리기 없이 본체만 판매, 제품인증표시 미부착, 인증기간 경과제품 판매 등

〈불법판매 제품사진〉

분쇄부와 2차 처리기 분리됨	2차 처리기 제거 후 분쇄부에 S트랩 연결(100% 배출)

❑ 협조사항

○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구매 및 사용으로 공공수역 오염방지

< 불법제품 판매·사용시 벌칙 조항 >

-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 직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
- 불법 분쇄기를 사용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붙 임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

경피용 BCG 백신 회수 조치관련 접종우려에 대한 안내

(자료제공 :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 055-211-4923)

□ BCG 결핵예방접종 백신이란?

○ BCG 백신은 생후 4주이내 신생아의 결핵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백신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피내용 BCG(보건소, 무료시행) : 덴마크산 ⇒ 국가예방접종 대상
- 경피용 BCG(민간의료기관, 유료시행) : 일본산 ⇒ 국가예방접종대상 아님

□ 경피용 BCG 백신회수 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 '18.11.7)

○ 회수대상 제품 :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제품명	제조원	수입원	회수사유	제조번호	시중 유통량(팩)	유효기간
경피용건조 비씨지백신 **(일본균주)**	일본비씨지제조 (일본)	㈜ 한국백신상사	제조원 출하정지	KHK147	60,397	'18.12.06.
				KHK148	60,551	'19.06.18.
				KHK149	21,177	'19.11.26.

※ 포장형태(1인용, 팩) : 백신 1앰플 + **용제 1앰플(생리식염수주사용제)** + 접종용 침

○ 회수 사유 : 일본 후생성에서 제조하여 영아에게 접종되는 경피용 BCG **백신의 첨부용액(백신이 아닌 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 초과 비소 검출**(0.1ppm→0.26ppm)되어 출하 정지 발표

□ 안전한 피내용 BCG 예방접종을 위한 안내사항

○ 이미 경피용 BCG접종을 받은 경우

– 검출된 비소 최대량은 0.26ppm으로 매일 최대 허용노출량의 1/38에 해당되며, 비소는 대부분 72시간 내 소변으로 배출됨

○ 앞으로 태어날 생후 4주이내 신생아의 경우

– 질병관리본부, 도 및 시·군(보건소) 홈페이지 피내용 BCG 예방접종기관을 확인한 후 접종

※ 피내용 백신 1바이알로 15~20명분의 접종이 가능하며, 백신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별 요일제 지정 및 사전 예약 등을 통하여 접종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음

붙임1 BCG 백신(피내용·경피용)의 특징

□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

○ 기존 피내용 BCG 접종 권고를 지속 유지

○ 일반적으로 BCG 백신은 피내접종법으로 접종되고 있으며, 경피접종법은 일부 국가에서 사용 중

□ 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비교

구분	피내용 BCG 백신	경피용BCG 백신 백신
무료 지원여부	국가예방접종사업용 무료지원	소비자 선택에 의한 유료부담 * 임시예방접종기간 동안 무료
접종 방법	· 피부에 약 15도 각도로 바늘 사면을 완전히 삽입한 후 백신 0.05ml 주입 * 주사액이 작은 피부융기(5~7mm)를 만들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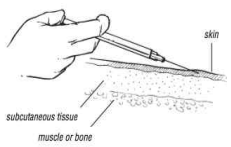	· 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후 9개 바늘을 가진 주사도구를 이용하여 두 번에 걸쳐 강하게 눌러 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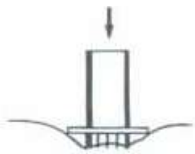

□ 피내용 BCG 접종 후 정상적인 피부병변 변화

붙임2 피내용 BCG 예방접종기관 현황('18.11.19일기준)

○ 보건소 접종 실시현황 : 20개보건소

시군명	피내용BCG 접종현황(접종 요일)	비 고
창원시창원	주1회(수요일오전)	
창원시마산	주1회(수요일오전)	
창원시진해	주1회(수요일오전)	
진주시	주2회(수요일, 목요일오전)	
통영시	주1회(수요일오전)	
사천시	주1회(화요일오전)	
김해시	주1회(수요일오전)	
밀양시	주1회(수요일오전)	
거제시	주2회(화요일, 수요일오전)	
양산시	주2회(수요일, 목요일오전)	
의령군	월1회(수요일오전)	
함안군	주1회(수요일오전)	
창녕군	2주1회(수요일오전)	
고성군	주1회(수요일오전)	
남해군	주1회(수요일오전)	
하동군	3주1회(월요일오전)	
산청군	주1회(화요일오전)	
함양군	2주1회(목요일오전)	
거창군	주1회(수요일오전)	
합천군	2주1회(화요일오전)	

○ 위탁의료기관 접종실시 현황 : 5개 의료기관

시군명	피내용BCG 접종실시 의료기관 현황	비 고
창원시창원	한마음창원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CNA서울아동병원	
진주시	미래아동병원: 주2회(화,목)	
	보람소아청소년과의원: 주3회(화,목,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자료제공: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055-211-5116)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로, 보행상장애를 가진 장애인, 그 보호자가 운행하는 차량(장애인탑승시)의 주차편의를 위해 설치한 주차구역임.

○ 추진배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시설로 장애인만 이용해야 하지만, 매년 불법주차 등 위반 사례 증가

□ 경남도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현황

(단위 : 명, 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9월말 기준		비고
단속건수	과태료	단속건수	과태료	단속건수	과태료	
9,976	970,145	12,992	1,268,339	15,067	1,855,713	

- 일제단속 및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장애인 배려심 제고 필요

○ 합동점검 기간 : 2018. 11. 12.(월) ~ 12. 11.(화) 1개월

· 점검대상 : 352개소(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시설 등)

· 점검주체 : 시·군, 시군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 단속내용 : 불법주차, 주차방해행위, 자동차표지위변조 등

○ 위반 과태료 : 불법주차(10만원), 주차방해(50만원), 주차방해(200만원)

○ 신고방법 : 주차구역 관할 시·군청,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위반장소, 위반차량 등이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지사

산불방지 예방 홍보

(자료제공: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 ☎ 055-211-4823)

□ 산불조심기간 산불 예방하기 위해서는

○ 산불 주요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논 · 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입니다.(71%)

○ 주택지 내 또는 야외에서 쓰레기나 논 · 밭두렁,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마시고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화재위험이 없는 곳에 잘 관리해 주세요.

○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주의해주세요.

겨울철 난방기, 특히 화목보일러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시고 연통은 T자형으로 설치하시고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논 ·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습니다.

논 ·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없고, 해충류는 11%가 방제되지만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는 89%나 죽습니다.

○ 안전 소각 행동요령 2가지 꼭 지켜주세요.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일체의 소각행위 금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은 반드시 시군 산림부서 허가 받아 실시(마을단위 공동소각)

○ 실수로 낸 산불, 강력한 처벌대상입니다. 신고하세요.

시군구 산림부서, 119, 경찰관서, 경상남도 산림녹지과 055-211-6823

산림보호법에 따른 처벌 규정

제53조(벌칙)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과태료)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1차 30만원/2차 40만원/3차 50만원)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30만원)

협조해주세요!

3

화목보일러의
타고 남은 재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화재위험이 없는 곳에
잘 관리해 주세요

4

주택지 내 또는
야외에서 쓰레기나
논·밭두렁,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실수로 낸 산불, 강력한 처벌대상

시·군·구 산림부서, 119, 경찰관서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산림보호법에 따른 처벌 규정

제53조(벌칙)

-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과태료)

-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1차 30만원 / 2차 40만원 / 3차 50만원
- 산이나 산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산림청

영농부산물 쓰레기 태우지 마세요

www.forest.go.kr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1

겨울철 난방기,
특히 화목보일러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2

화목보일러의 연통(굴뚝)은
T자형으로 설치하시고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농약허용기준 강화(PLS)-2019년 1월1일 시행

(자료제공: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055-211-6444)

❑ 제도개요

❍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 잔류농약허용기준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

잔류허용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재)	PLS 시행 후
설정농약	각 농약별로 설정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적용	
미설정농약	① CODEX(국제식품규격)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 미등록 농약의 오·남용 방지 및 국내 생산 농산물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도입

❍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 또는 농사로(http://www.nongsaro.go.kr)에서 확인 가능

❑ 제도 추진경과

❍ 최초 PLS 도입 계획 발표(식약처) : '11. 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도입 고시 : '15. 10.

❍ 1차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대상으로 우선 적용('16.12.31. 시행)

❍ 모든 농산물에 대한 PLS 도입 행정예고 : '17. 7.

❍ 나머지 농산물 전면시행 : '19. 1. 1. 예정

❑ 시군 협조사항

❍ 도민들의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지속추진

- 시군, 읍면동 행정망 활용 PLS 교육·홍보 전파

❍ 시군보, 읍면동 소식지 등에 PLS 전면시행(2019. 1. 1.) 홍보 철저

붙 임	PLS 관련 공통 교육·홍보 자료

농약, 이렇게 사용 하세요

-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은 사용하지 않기

농업인 농약사용 실천

- ∨ 농약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사용목적과 시기에 맞게, 사용횟수를 지켜서 쓰세요.
- ∨ 해당 작물과 병해충에 사용하는 농약이 맞는지 적어도 두 번 확인하세요.

농약 구매 시 ❯ 농약 판매업자에게 확인 | 농약 사용 시 ❯ 농약 포장지 라벨 확인

등록 농약 검색은 → http://pis.rda.go.kr 검색

경상남도

■ 문의 : 농촌진흥청(1544-8572)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하여 2019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되는 농약사용 기준(PLS)에 대비합시다.

2019년 1월 1일 시행

농약허용기준 강화(PLS)

이것만 지켜주세요!

1.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2.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3. 농약 사용 시기·횟수·용량·희석배수 준수하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 운영 안내

(자료제공 :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점검단 ☎ 055-211-2763)

생활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으로 도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운영 안내입니다.

□ **운영기간 :** '18. 10월 ~

□ **운영방법 :** 연중 **도민** 안전점검 신청 → 현장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주택, 교량, 옹벽 등 생활주변 안전점검 필요시설

- (건축물)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 단, 단독주택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 주택
- (시설물)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 민원·소송 및 공사장 피해분쟁, 법적 점검대상 시설물은 제외
  ※ 세부 점검대상 붙임 참조

□ **점 검 반 :** 도 및 시·군 전문 안전점검단

□ **주요내용 :** 안전성 확인 및 안전관리 컨설팅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시·군 안전총괄부서 방문 및 팩스 신청

붙임 1.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 점검대상 1부.
2.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신청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 점검대상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고
건축물	주 택	◦ 단독주택 ◦ 4층 이하 공동주택(연립포함)	**※ 단독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조적조만 해당**	
	판매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비디오·게임제공업 등)	
	숙박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운수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연장	◦ 연면적 500㎡ 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장	◦ 연면적 500㎡ 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장	◦ 연면적 1,000㎡ 미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전시장	◦ 연면적 1,000㎡ 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장례식장	◦ 연면적 1,000㎡ 미만	장례식장	
	종교시설	◦ 연면적 500㎡ 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시설	◦ 연면적 300㎡ 미만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관광 휴게시설	◦ 연면적 300㎡ 미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수련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 연면적 1,000㎡ 미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 사회복지시설 등	
	운동시설	◦ 연면적 500㎡ 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시설물	축대·옹벽	◦ 높이 5m이하 길이 100m 미만	축대·옹벽	
	교 량	◦ 도로교량 연장 20m 미만	교량	

※ 건축물 :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시설물 : 준공된 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붙임 2 신청서식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신청서(도민)

2018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점검대상 주소	
건축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 ) 벽돌( ) 블럭( ) 기타( )
	연면적	㎡
	층 수	지하 층 / 지상 층
	준공연월일	
	용 도	주택( ) 판매시설( ) 공연장(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 기타( )
시설물	종 류	옹벽( ) 축대( ) 절개지( ) 기타( )
	규 모	길이 : 높이 : 폭(두께) :
	준공연월일	
위험요인 및 요청사항		

2018년 11월 국정홍보만화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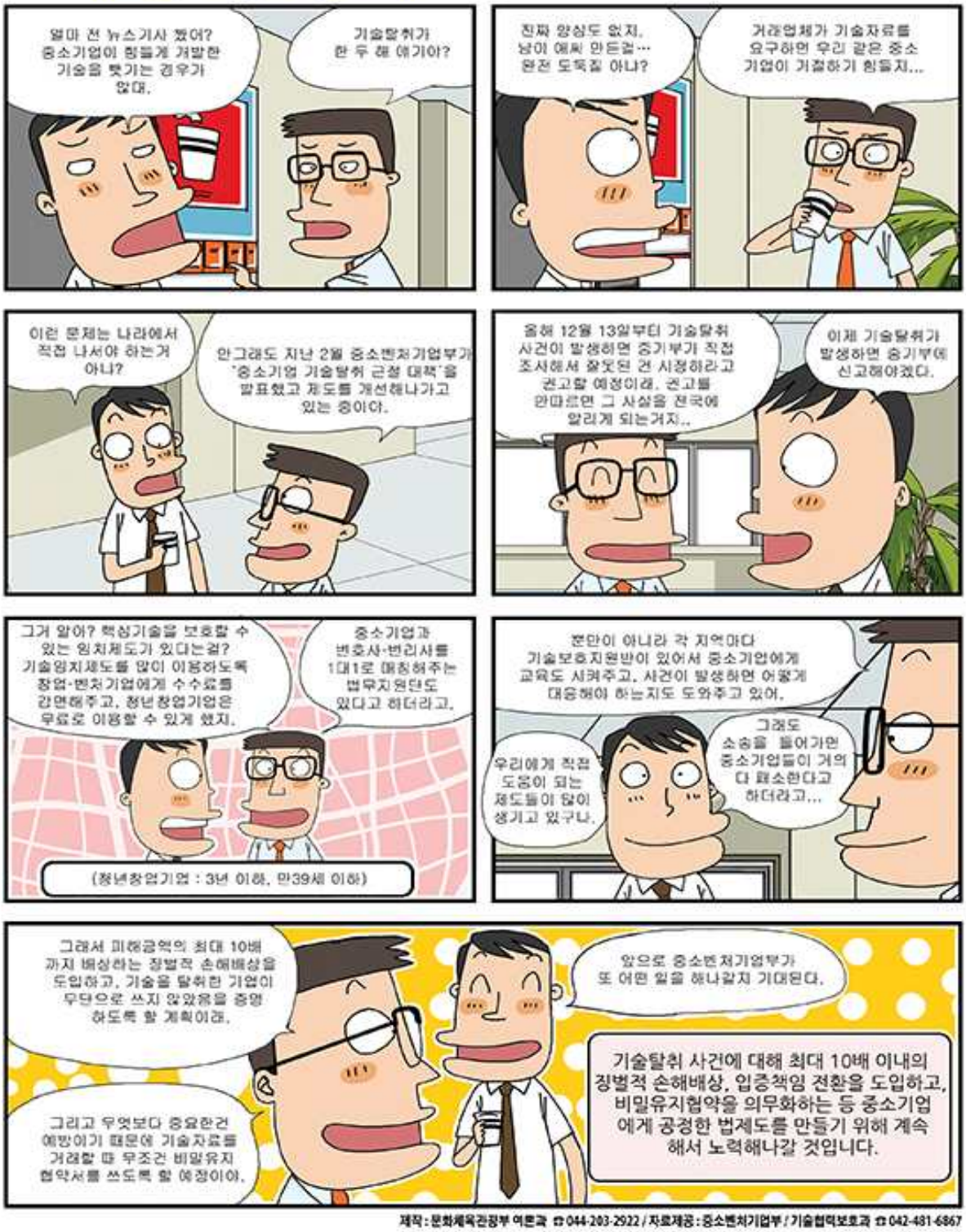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044-203-2922 / 자료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협력보호과 ☎042-481-6867

2018년 11월 국정홍보만화 [복지상담, 카카오톡]

보건복지 상담, 이젠 '카카오톡' 으로도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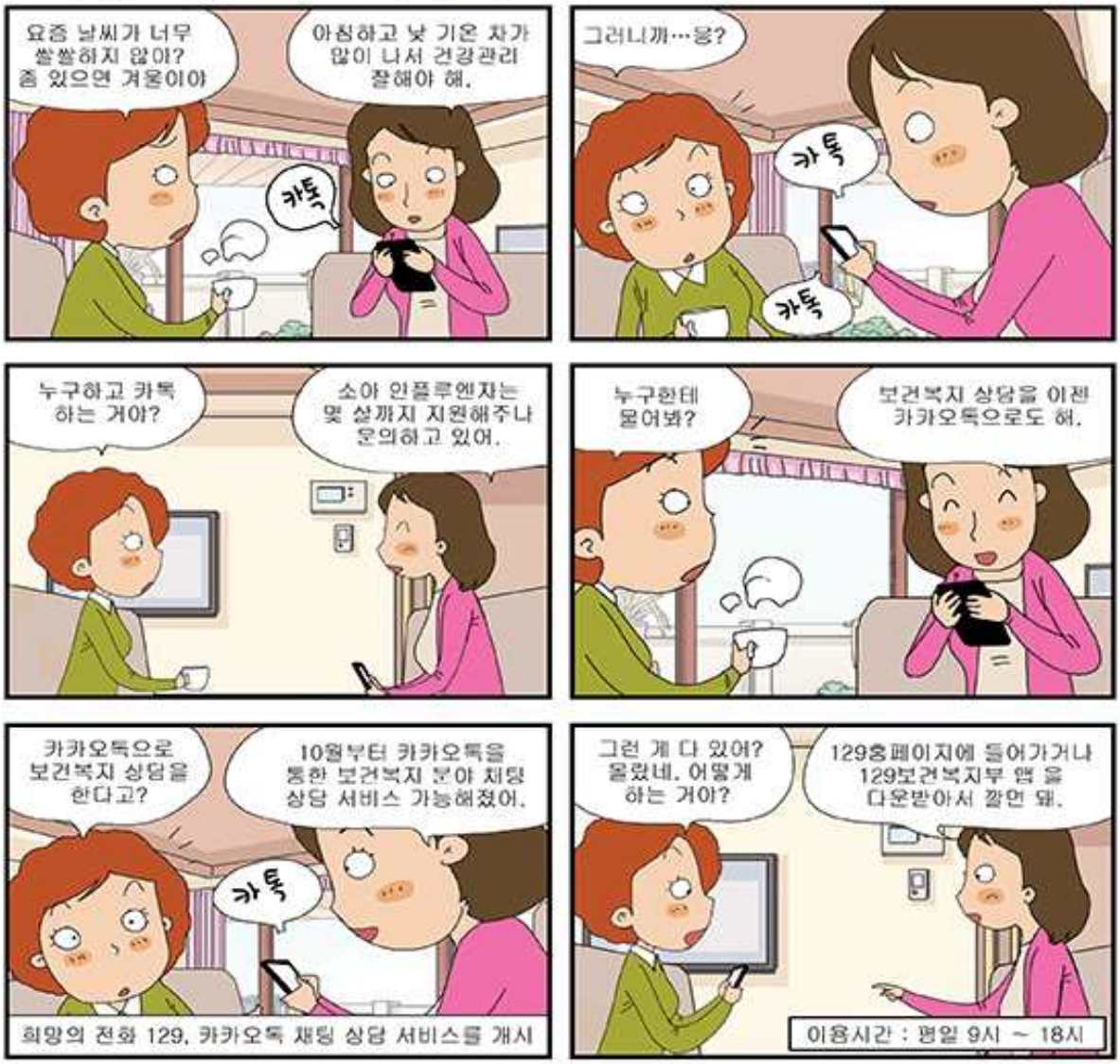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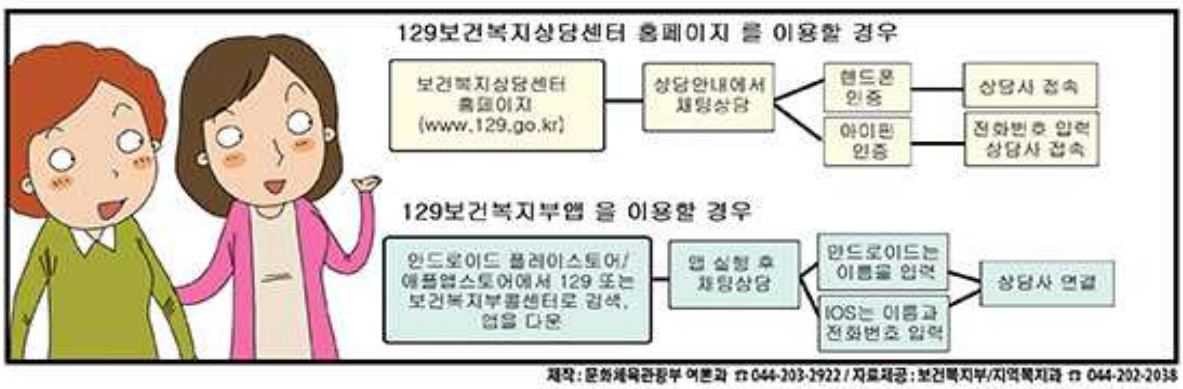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어문과 ☎ 044-203-2922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 ☎ 044-202-2038